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1. 17.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인구증가 신규 시책인 결혼축하금 지원사항 신설 및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별지 제1호서식] 결혼축하금 해당항목 신설
- 나.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삭제(안 제3조)
 - [별지 제1호서식] 기타 예방접종지원 해당항목 삭제
- 다. 전입세대 주택개량 용자금, 빈집 알선·수선·정비비, 지붕개량비 지원 삭제(안 제3조)
- 라.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자에 대해 인구시책 지원 신청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적용에서 제외함(안 제4조, 부칙 제2조)
- 마. 기업근로자 전입 지원금 지원 횟수(최초 1회) 한정(별표)
- 바.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성별 구분 항목 신설(별지 제2호서식)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검토의견: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해당조항: 별지 제2호서식	□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함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결과 통보 (복지지원과-39359호 (2023.10.13.))]	□ 별지 제2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반영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561호

가) 예고기간: 2023. 10. 13.~2023. 11. 2.(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제출 1건(고성군 보건소)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제1호에 기타 예방접종 지원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폐지로 삭제

입법 예고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하생략 1.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타 예방접종지원,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하생략.	로타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선택 예방 접종에서 국가 예방 접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2023.3.6.)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보건 행정과-20962호 (2023.11.2.))]	- 반영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하생략 1.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하생략.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타 예방접종 지원, 한방첩약”을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한방첩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개량 용자금, 빈집 알선·수선·정비비, 지방개량비, 공공시설이용”을 “공공시설이용”으로,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결혼축하금 지원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중 한명이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6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축하금 지원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 중에 전입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고성군에 두고 있는 고성군민에 한한다.

5. 전입세대에게는 주택개량 용자금, 빈집 알선·수선·정비비, 지붕개량비, 공공시설이용 우대, 전입축하금, 재산세(주택분)·주민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생략)

<신설>

7. (생략)

② (생략)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시책과 관련한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5. ----- 공공시설이용 -----

-----.

6. (현행과 같음)

7. 결혼축하금 지원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중 한명이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

1. -----

<p>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u>6개월 이내</u>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는 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u>6개월 이내</u>(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한다)-----</p> <p>-----</p> <p>-----</p> <p>-----</p> <p>-----</p> <p>-----</p> <p>-----</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현행)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출산 산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가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 첫째아이 100만원 지급 ○ 둘째아이 200만원 지급 ○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급	
	기타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첫째아이 이상 아동에 지원	○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대상자 중 출산모에게 지원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 대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전 입 세 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 세대에 지원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사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 입 세 대	주택개량 용자금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전입 세대에 지원 *기존 추진 중인 사업 연계사업으로 매년 연초 해당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혜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음 *귀농은 별도 사업 추진중	○ 주택개량 용자금 지원 - 대상: 주택개량 시(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침 참고) - 신청조건: 주거면적 150㎡ 이하 개·증축, 신축 - 용자금액: 사업실적확인 또는 평가금액 이내(최대2억원) ○ 빈집정비 시 보조금 지원 - 대상: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 정비 시 - 지원금액 · 일반지붕 100만원 · 슬레이트 지붕 50만원 (슬레이트 처리 별도 지원) ○ 지붕개량(슬레이트 지붕)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12만원 (사업비의 50%, 슬레이트 처리 별도 지원)	
	빈집정비비			
	지붕개량비			
	전입촉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2년간 전액 지원	
	재산세 (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전입 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00.00.00.>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출산 산려	결혼축하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대상자에게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회</td> <td>2회</td> <td>3회</td> </tr> <tr> <td>금액</td> <td>5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r> <td>시기</td> <td>신청일로부터 익월</td> <td>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td> <td>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td> </tr> </table>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구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가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 첫째아이 100만원 지급 ○ 둘째아이 200만원 지급 ○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급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대상자 중 출산모에게 지원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 대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쓰레기봉투 연 20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전 입 세 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 세대에 지원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 (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2년간 전액 지원	
	재산세(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약

- 비용발생 요인: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신혼부부 매년 110쌍
- 2) 사업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3) 지급방법: 2년간 현금 분할 지급(생애 1회)

구 분	1회	2회	3회
금 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 기	신청일로부터 익월	첫 지급월로부터 1년 뒤	첫 지급월로부터 2년 뒤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군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 2028년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재원 조달	의존재원	-	-	-	-	-	-
	자체재원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기 타	-	-	-	-	-	-
	소 계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중 춘